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공 보

<http://www.daedeok.go.kr>

제2022-67호  
2022. 9. 30.(금)

선	기관(부서)의 장
람	

## 차 례

### 조 례(18)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606호) … 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607호) …… 3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조례 제1608호) …… 6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609호) …… 13
-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징물 운영 조례(조례 제1610호) …… 16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611호) …… 26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조례 제1612호) …… 30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613호) …… 33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614호) …… 38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615호) …… 4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616호) …… 47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617호) …… 5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618호) …… 56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조례 제1619호) …… 59
-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계류대여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조례 제1620호) …… 63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621호) …… 65
-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622호) …… 67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623호) …… 70

# 차 례

## 규 칙(4)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939호) ..... 73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940호) .... 76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941호) ..... 78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942호) .... 86

## 훈 령(3)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훈령 제473호) ..... 89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정 폐지규정(훈령 제474호) ..... 92
-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징물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훈령 제475호) ..... 94

## 고 시(2)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22-81호) ..... 96
-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 승인 고시(고시 제2022-82호) ..... 97

## 공 고(5)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2-941호) ... 102
-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공고 제2022-945호) ..... 105
-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공고 제2022-947호) ..... 106
-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2-951호) ..... 107
- 2022년 결산기준 지방재정공시(공고 제2022-955호) ..... 111

## 입법예고(1)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2-956호) ... 113

공  
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9월 30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606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2. 증인 선서서 본문 중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를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행정사무감사의 증인 선서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 법령 인용 조항을 변경함(별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9월 30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607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81명”을 “79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61명”을 “771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791					
정 무 직	소계	1					
	구청장	1	1				
일 반 직	소계	788					
	3급	1	1				
	4급	5	4		1		
	5급	47	27	3	4	1	12
	6급 이하	735					
별 정 직	소계	2					
	6급 상당	1	1				
	7급 상당	1	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등 행정수요 발생에 따라 원활한 현안 업무추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81명”에서 “791명”으로 조정함(제2조 및 별표 3).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9월 30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충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608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 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기초로 제5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의 전체를 총괄·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관련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업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민은 구청장의 공약사항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증 및 평가와 관련된 구민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공약사업의 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4조(관리체계) ① 총괄부서는 기획홍보실로 하고,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의 장은 사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공약사업 확정) 구청장은 취임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선거공약 자료와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약사업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적정성
2. 임기 내 실천가능성 및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
3. 법률적 검토
4. 사업 소요액 및 연도별 채용조달 계획 등

제6조(실천계획의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비전, 전략 및 추진 방향
2. 실천계획의 총괄 개요
3. 소요 자원 및 조달 방안
4. 공약사업별 추진계획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조정한 후 구청장 및 주민평가단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공약확정일부터 6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7조(실천계획의 변경)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수립 후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 후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실천계획 이행 및 자체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분기별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자체평가 결과를 종합분석·평가하고, 부진 또는 문제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공약사업주민평가단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약사업주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변경
2. 공약사업 이행 평가
3. 그 밖에 공약사항 이행에 대한 의견 또는 개선사항

② 평가단은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사회적·연령별·지역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 추천·공모·위촉 등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구청장의 임기와 같다. 다만,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평가단의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평가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평가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평가단의 운영 등) ① 평가단장은 평가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평가단의 정기 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다만, 평가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 개최하거나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평가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평가단은 평가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평가단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단의 의결을 거쳐 평가단장이 정한다.

제12조(평가 방법) ① 평가단은 공약사업이 당초 공약한 취지대로 이행되었는지를 사업별 진척도, 사업비 확보 등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공약이행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평가결과 및 주민보고회) ① 구청장은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구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평가단에 통보한다.

② 구청장은 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주민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4조(공개 및 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공약사항의 확정, 실천계획의 수립·변경, 추진상황 및 공약사업 이행 평가결과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약사항 이행 현황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통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홍보매체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약사업주민평가단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정」에 따라 구성된 공약사업주민평가단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제정이유

구청장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추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 의지와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제3조).
- 나. 총괄부서 지정 등 공약사항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
- 다. 공약사업의 확정, 실천계획의 수립·변경, 실천계획의 이행 및 자체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부터 제8조까지).
- 라. 공약사업주민평가단의 설치, 운영,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마. 공약사업의 평가 및 반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2조).
- 바.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와 건의사항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대해 주민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함(제13조).
- 사. 공약사항의 확정, 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추진상황, 공약사업 이행 평가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공약사항 이행 현황 등을 구 홍보매체를 통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9월 30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609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을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

항”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적극행정위원회를 두되,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법」 제11조”를 “법 제11조”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의 개정으로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및 심의 사항 등의 근거가 시행령에서 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적극행정을 실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목적 규정을 정비함(제1조).
- 나.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상위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함(제2조).
- 다.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근거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과 중복된 위원회의 기능을 삭제함(제3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징물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9월 30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충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610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징물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를 나타내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것으로 제3조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①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 별표 1
2. 브랜드슬로건: 별표 2
3. 캐릭터: 별표 3
4. 구가(區歌): 별표 4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여론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4조(상징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 각 호의 상징물 사용에 대한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상징물 관련 사업)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전문업체와 용역 계약을 통해 관리·운영할 수 있으며, 용역 계약의 절차와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제7조(사용승인의 거부·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1. 상징물을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상징물을 사용자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해치거나 지역사회 발전을 방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용승인 받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상징물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상징물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반 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상표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심벌마크(제3조제1호 관련)

		
 주황색은 계족산의 떠오르는 태양, 정다운 대덕 상징  녹색은 푸른 숲, 늘 푸른 대덕 상징  파란색은 금강-대청호의 맑은 물, 희망찬 미래 상징	<p>천(天 - 파란색) 지(地 - 녹색) 인(人 - 주황색)이 삼위일체(三位一體)되어 쾌적한 환경, 인간중심의 복지행정을 구현하여 구민들의 꿈과 소망을 무지개처럼 승화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p>	
 <p>대덕청색 # 0071bc</p>	 <p>대덕주황색 # f58220</p>	 <p>대덕녹색 # 00ac6c</p>

[별표 2]

브랜드슬로건(제3조제2호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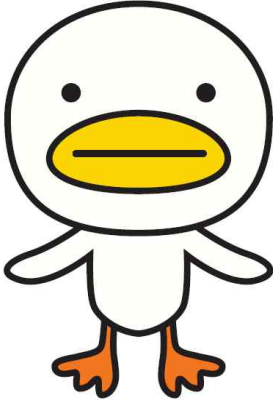
○ 브랜드슬로건: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별표 3]

캐릭터(제3조제3호 관련)

1. 캐릭터 기본형

	
덕구(Deok-gu)	더기더기(Duck2Duck2)

2. 캐릭터 설명

가. 덕구

‘대덕구’라는 명칭 자체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직관성을 고려하여 ‘덕구’라고 명명하였으며, 긴 속눈썹에 하트 모양의 코, 홍조를 띤 볼, 단발머리 같지만 알고 보면 축 늘어진 귀를 가진 오묘하게 매력적인 강아지임.

나. 더기더기

항상 무표정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자세히 보면 손과 발이 가만히 있지 않는 출썩 오리(Duck)로 여행, 맛집 탐방, 음악 감상을 즐김.

※ 메인캐릭터인 ‘덕구’와 서브캐릭터인 ‘더기더기’는 대덕구 직원으로 구성된 학습동아리에서 아이디어·기획·디자인까지 자체 연구 개발한 캐릭터임.

[별표 4]

구가(區歌)(제3조제4호 관련)

**대덕으로 가!**

작사/작곡 유수빈

(전주)

5 Am G Fmaj7 E Am G Fmaj7 E  
천년의역-사를자랑하-는- 대전의터-춧대감 대덕-구- 심심한노-잼동네 가아-나- 반전매력-곳곳에 넘치-지-

13 Am G Fmaj7 E Am G Fmaj7 E  
빠지면헤-어나올 수없-는- 나만알긴-아까운 대덕-구- 산업단지-만있는 게아-나- 문화유적-부터자 연속힐링까 지!

21 Am G Fmaj7 Em Am G F/D Em  
도심-가-운대전 통을느껴봐- 한옥-마-을갈 필요없잖아- 길치-공-원가도 길을안잃어- 커다-란-아치 다리있잖아-

29 Am G Fmaj7 Em Am G F/D Em  
지친-나-를위해 떠나는여행- 사계-절-아름다 운두메마을- 맨발-로-황톳 길을걸어봐- 발가 락사이 미끌거릴거야우!

37 Am (간주) G F Dm E

45 Am G Fmaj7 E Am G Fmaj7 E  
빠지면헤-어나올 수없-는- 나만알긴-아까운 대덕-구- 구석구석-레트로 골목-길- 세상힘한-친구를 모두따라와 봐!

53 Am G F E Am G F E  
한 번 오 면 계 - 속 오 고 싶 - 은 대 덕 구      두 번 오 면 헤 - 어 날 수 없 - 는 대 덕 구  
한 번 오 면 계 - 속 오 고 싶 - 은 대 덕 구      두 번 오 면 헤 - 어 날 수 없 - 는 대 덕 구

61 Am G Fmaj7 Em Am G Fmaj7 Em  
줄길-줄-모른다 고누가그래- 대전-최-고음악 축제있잖아- 독일-맥-주축제 부럽지않아-줄 거라대 코 맥주페스티벌우!  
드라-마-활영지 부럽지않아- 주위-에-널린게 명소들이야- 메타-세-콰이어 있는것도모-르지너 는대 청호 해맞이가봤니우!

69 Am G F E Am G F E  
한 번 오 면 계 - 속 오 고 싶 - 은 대 덕 구      두 번 오 면 헤 - 어 날 수 없 - 는 대 덕 구

※ 음원은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신청인	성명 (대표자명)	
	법인 또는 단체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e-mail)	
사용계획	사용하고자 하는 상징물	
	사용목적	
	사용내용	
	사용기간	
	기타 (사용방법 등)	
구비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용도안</li> <li>2. 증빙자료</li> <li>3. 그 밖의 참고자료</li> </ol>	
그 밖의 참고사항 ※기업의 업종 및 주생산품 등 간략히 소개		
위와 같이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승인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span style="width: 45%;">신청인    성명</span> <span style="width: 45%;">(서명 또는 인)</span> </div>		

[별지 제2호서식]

###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

신청인	성명 (대표자명)	
	법인 또는 단체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e-mail)	
사용계획	사용하고자 하는 상징물	
	변경이유	
	변경내용	
	변경기간	
	기타	
구비서류	1. 사용도안 2. 증빙자료 3. 그 밖의 참고자료	
그 밖의 참고사항 ※기업의 업종 및 주생산품 등 간략히 소개		
위와 같이 상징물의 사용을 변경하고자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제정이유

우리 구를 대표하는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덕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도시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함(제3조).
- 나. 상징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
- 다. 상징물을 활용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
- 라. 상징물의 사용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
- 마. 상징물 사용승인의 거부·취소 및 위반 시 조치사항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조 및 제8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9월 30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충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611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읍부즈만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를 “읍부즈만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지방공무원법」 제31조”를 “「지방공무원법」 제31조”로 한다.

제9조제2호 중 “금고이상”을 “금고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개의하고”를 “개의(開議)하고”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의 제목 “(시정·권고 및 의견 표명)”을 “(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고충민원의 내용”을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으로, “시정조치 요구 및 제도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할”을 “시정을 권고할”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및 그 밖의 정책·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3조의3(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옴부즈만은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기 전에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구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직원,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옴부즈만이 개최하는 회의 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의4(이행실태의 보고)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 등을 받은 기관은 처리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옴부즈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직원은 제출된 자료를 정리하여 옴부즈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적용대상 및 요건,”을 “적용대상, 요건 및”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상위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부합하도록 고충민원의 조사에 필요한 ombudsman의 조사권한을 규정하고, ombudsman의 시정 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등 각각의 요건을 명확히 정비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미비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가. ombudsman이 고충민원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요구권, 출석요구권, 실지조사 등 조사권한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2조제2항).

나. ombudsman이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시정의 권고”,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의견의 표명”,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도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 각각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ombudsman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제13조 및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신설).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동  
우회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9월 30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612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행정  
동우회 대전광역시지회 대덕구분회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지방행정동우회 대전광역시지회 대덕구분회(이하 “행정동  
우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5.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보조금의 지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의 승인) 행정동우회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실적보고) 행정동우회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행정동우회의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제정이유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행정동우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전직 지방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이용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고 구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행정동우회의 수행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조).
- 나. 행정동우회의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조).
- 다. 보조사업 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
- 라. 보조금의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9월 30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613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3조 중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를 “투표인명부”로, “사람”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 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청구인서명부의 제출)”을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주소나 거소”를 “주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청구인 서명부”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대덕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대덕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관련 시민단체 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④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를 총괄한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심의회 운영 등) ① 심의회 회의는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 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대덕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의 제목 “(주민투표청구서등의 서식)”을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으로 한다.

제16조 중 “조례 제10조제4항, 법 제1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1항”을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제4항·제5항 및 이 조례 제10조제4항”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제12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자동 해산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 회의 방식을 비상설로 전환하여 심의회 운영의 내실화 및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투표권 대상자 연령 규정을 삭제함(제3조).
- 나. 조례로 위임했던 주민투표 대상이 법령에 명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제4조 삭제).
- 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근거가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제12조 및 제12조의2).
- 라. 안전 발생 빈도가 적은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화하여 운영의 효율을 도모함(제12조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9월 30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충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614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2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11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71조의2제1항”을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3조의3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50%),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50퍼센트), 매각업



무 수행능력(50퍼센트)”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개의”를 “개의(開議)”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공고일 부터”를 “공고일부터”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휴·폐업 등으로 법 제71조의2”를 “휴업·폐업 등으로 영 제91조의11제1항제1호”로 한다.

제7조 중 “가액”을 “가액(價額)”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매수인으로 부터”를 “매수인으로부터”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차감하고”를 “빼고”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해제하려면”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예술품등에 대한 전문매각기관 선정 관련 인용 조문을 변경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가. 예술품등의 전문매각기관에 대한 인용 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함(제2조 및 제6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함.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9월 30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615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를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2항제4호”를 “법 제16조제2항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개별법령 또는 조례”를 “조례”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공유재산관리대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용료·대부료 수납 여부

제15조의 제목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을 “(무상사용허가 대상 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을 “무상사용허가 대상”으로 한다.

제17조 중 “재산관리책임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의 제한)”을 “(사용허가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수익허가 하고자”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 해서는 아니된다”를 “사용·수익허가해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를 “(사용허가관리대장의 비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 허가부를”을 “사용허가관리대장을”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를”로 한다.

제22조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5조 중 “영 제9조제1항제4호, 제23조, 제32조제3항”을 “영 제32조제3항”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으로 한다.

제26조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대덕구(이하“구””를 “대덕구(이하 “구””로 한다.

제27조제4항제2호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3항”으로,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100 퍼센트”를 “100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가목 및 같은 항 나목 본문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 하도록”을 “사용하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를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 또는”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대부정리부의 비치)”를 “(대부관리대장의 비치)”로 하

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부정리부를”을 “대부관리대장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리부”를 “대부관리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을 “재산관리대장과 대부재산 현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년월일”을 “연월일”로 한다.

제38조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한다.

제39조제6호 중 “수의매각을 할수 있다.”를 “매각하는 경우”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위치·규모·재원확보”를 “위치·규모·재원확보”로, “수립 시행”을 “수립·시행”으로 한다.

제47조 중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를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로 한다.

제55조제1호 중 “신·개축”을 “신축·개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응접셋트, 카텐”을 “응접세트, 커튼”으로 한다.

제57조 중 “비품대장”을 “비품관리대장”으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영 제81조제4항”을 “영 제81조제1항”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중 “소유권이전 등기”를 “소유권이전등기”로 한다.

제64조 중 “공유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한다.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의 공개)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법률 제18086호, 2021. 4. 20. 일부개정, 2022. 4. 21. 시행)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용어를 법령과 일치되도록 정비하여 법령 간 통일성을 제고하고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 주요내용

가. 개별 법령에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이나 무상대부 규정이 있는 경우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제4조제2항제5호).

나.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함(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의 공개 방법과 주기를 회계연도마다 구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게시하도록 함(제66조 신설).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함.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9월 30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616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전광역시”를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로, “과정”을 “등 예산과정”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타”를 “다른”으로, “과정에 참여하는 자”를 “등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자 중”을 “사람 중”으로, “자는 각”을 “사람은”으로,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 위원

의 2분의1 이상으로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대해”를 “대하여”로, “전문가로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을 “전문가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같은 호 부터 제3호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타”를 “다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반하는”을 “어긋나는”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3항 중 “개의하고”를 “개의(開議)하고”로 한다.

제15조 중 “제외 하고는”을 “제외하고는”으로, “일시 및”을 “일시,”로, “발언내용,”을 “발언내용 및”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위원회”를 “주민, 위원회”로, “예산참여 전에 실시”를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예산 과정”을 “예산과정”으로 한다.

제18조 중 “다음연도”를 “다음 연도”로 한다.

제19조 중 “인정하는”을 “인정할”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을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청취하거나”를 “듣거나”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10명”을 “2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10명 이내로 한다”를 “2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제25조제2항 중 “자치분권과장”을 “공동체과장”으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주민제안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 기구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주민 주도의 실질적 주민 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조례운영 근거법령 추가 및 주민 참여범위를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하여 예산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조 및 제2조제3호, 제13조제3호 삭제, 제23조제1호).
- 나. 다양한 주민의 참여와 고른 성별의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예산 참여 구민위원회 위촉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제7조제3항 후단 신설 및 제7조제4항 후단 신설).
- 다. 교육대상 확대 및 운영의 현실화를 위하여 예산학교 참석 범위 및운영 시기를 정비함(제17조제2항).
- 라. 많은 주민의 참여를 위하여 지역회의 위원 수를 25명 이내로 확대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용어를 변경함(제22조제2항 및 제22조제3항제2호).
-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구를 정비함(제2조 등).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9월 30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충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617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대덕구”를 “구”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비영리 목적으로 등록된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를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의2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스포츠클럽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9. “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설립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회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체육회를 말한다.

제5조제2항 중 “위촉 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지원 및 범위)”를 “(지원 및 범위 등)”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2.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
3.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보조
4. 그 밖에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스포츠클럽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④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제1항 중 “제16조”를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보칙”을 “체육단체 지원”으로 한다.

제6장에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체육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常勤)직원 인건비
2. 사무실 운영 경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운영비 지원액의 산정 기준·범위와 운영비의 부담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9조의3(운영비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체육단체는 운영비 교부 결정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앞에 “제7장 보칙”을 삽입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

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3호까지”를 “제14호까지”로 한다.

14.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포츠클럽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가.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8808호, 2022. 2. 3., 2022. 8. 11. 시행) 개정으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
- 나. 「스포츠클럽법」(법률 제18252호, 2021. 6. 15., 2022. 6. 16. 시행) 제정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에 맞게 “스포츠클럽”과 “지정스포츠클럽”의 용어의 뜻을 정비·신설하고,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된 “체육단체”의 용어의 뜻을 추가함(제2조제6호, 제2조6의2호·9호 신설).
- 나. 체육진흥협의회의 부위원장을 “위촉 위원”에서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함(제5조제2항).
- 다. 스포츠클럽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 예산지원 근거 및 절차를 정함(제16조제1항).
- 라. 지정스포츠클럽에 체육시설의 사용 허가·위탁에 관한 근거 및 방법을 정함(제16조제2항 및 제3항).
- 마.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6조제4항).
- 바. 체육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9월 30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618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를 “법 제2조”로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8조제1항 중 “사회복지사”를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로, “위하여”를 “위한”으로, “조사”를 “조사·공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을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9조(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의2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표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개정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맞게 목적 규정을 정비함(제1조).

나.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기능이 유사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표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함(제9조, 제10조 및 제11조 삭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9월 30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619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다만, 자치단체간의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료 비율을 달리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

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지원사업 등) ① 영 제19조제1항제5호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자율상권조합은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연도마다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대전광역시 대덕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제정이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57호, 2021. 7. 27. 제정, 2022. 4.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613호, 2022. 4. 27. 제정, 2022. 4. 28.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상생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충족 조건 중 조례로 정하는 임대 비율(100분의 5)을 정함(제2조).
- 나.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구비서류를 정함(제3조).
- 다.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를 정함(제4조).
- 라. 자율상권조합의 지원사업 및 사업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 및 제6조).
- 마.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계류  
대여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9월 30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620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계류대여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계류대여 및 관리조례를 폐지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 □ 폐지이유

「대전광역시 농업기계 교육 및 임대사업 운영조례」(2018. 1. 1.시행)에 따라 농업인에게 대전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련 기계류의 무상 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계류대여 및 관리조례」를 폐지함.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9월 30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621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4항 및 제6항과”를 “법 제5조제5  
항·제7항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허가기준 :”을 각  
각 “허가기준:”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22.2.3. 시행)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상위법령의 근거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과 일치되도록 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사업 허가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관련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한글맞춤법에 따른 문장부호의 띄어쓰기를 정비함(제3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9월 30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충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622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지상 2층 이상의 해체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20미터 반경 내에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신호등(「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행신호등을

말한다)이 있는 횡단보도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변 여건상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체 허가를 받도록 하는 「건축물관리법」이 개정(2022. 2. 3.)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을 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을 정함(제6조의2 신설).
  - 1) 2층 이상의 해체 건축물의 반경 20미터 이내의 시설
    -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 2) 해체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9월 30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623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사건립 기금”을 “청사건립기금 조성”으로 한다.

제2조 중 “청사건립기금(이하“기금””을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으로 한다.

제4조 중 “존속기간은 2022년 12월 31일”을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예탁”을 “예탁(豫託)”으로 한다.

제10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규칙」”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청사건립에 필요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금을 운용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가.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4조).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9월 30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939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제2조 관련)

※ 엑셀파일 별첨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조례에서 행정수요 발생으로 일부 정원이 조정됨에 따라 직급·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1) 정원의 증원: 정원 781명 → 791명(10명 증가)

2) 일반직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

▶ 6급: 184명 → 187명(3명 증가)

▶ 7급: 237명 → 239명(2명 증가)

▶ 8급: 220명 → 226명(6명 증가)

▶ 9급: 84명 → 83명(1명 감소)

3)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 조정

▶ 본청 511명 → 512명(1명 증가)

▶ 동 167명 → 176명(9명 증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9월 30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940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대외협력 분야에 대한 구청장”을 “구청장”으로, “대외협력보좌관을 두며, 대외협력보좌관”을 “정책보좌관을 두며, 정책보좌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감사평가실장”을 각각 “감사실장”으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보좌기관의 명칭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구정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구청장의 정책결정 등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을 “대외협력보좌관”에서 “정책보좌관”으로 변경함(제2조의2).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9월 30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941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소인”을 “소인(消印)”으로 한다.

제10조 중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결손처리하고”를 “시효완성정리를 하고”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결손처분)”을 “(정리보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06조에 따른 결손처분은”을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정리보류



는”으로, “결손결정결의서”를 “정리보류 결정결의서”로, “결손처분표”를 “정리보류표”로 한다.

제1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법 106조제2항에 따른 시효완성정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효완성정리 결정결의서와 별지 제9호의2서식 시효완성정리표에 따른다.

제14조의 제목 “(지난 회계연도 결손처분 취소 시 이월액 정리)”를 “(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 취소 시 이월액 정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을”을 “정리보류를”로, “결손처분 취소액”을 “정리보류 취소액”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결손처분의 사후관리)”를 “(정리보류의 사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을 한”을 “정리보류를 한”으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1조의2제1항”을 “법 제103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20조 중 “영 제74조의2제5항”을 “영 제91조의11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부과·신고납부·감액·결손)결정액 통지부”를 “(부과·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결정액 통지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제목 “세입(부과·신고납부·감액·결손)결정액 통지

서”를 “세입(부과·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결정액 통지서”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의 “결손”을 “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감액/결손”을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 금액”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구분란 중 “불납결손액”을 “불납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 금액”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갑)의 (앞쪽) 제목 “결 손 처 분 표”를 “정 리 보 류 표”로,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로, 같은 쪽 하단의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으로 하고, 같은 서식(갑)의 (뒤쪽) 제목 “결 손 처 분 표”를 “정 리 보 류 표”로 하며, 같은 서식(을)의 제목 “결 손 처 분 표”를 “정 리 보 류 표”로,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정리보류”로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을 별지와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결손처분여부”를 “정리보류여부”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2) 신청 자격란의 가.란 중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쪽

하단의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1항 제1호”를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1항제1호”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5항(제6항)”을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압류에 관계된 채납액란 중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란의 “지방세”를 “본세”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font-size: 2em; margin-right: 10px;">[</div> <div style="margin-right: 10px;"> <input type="checkbox"/> 부과  <input type="checkbox"/> 신고납부  <input type="checkbox"/> 감액  <input type="checkbox"/> 정리보류  <input type="checkbox"/> 시효완성정리                 </div> <div style="font-size: 2em; margin-left: 10px;">]</div> </div> <div style="margin-left: 20px; font-weight: bold;">결정결의서</div>							
징수관			발의	년 월 일 (인)			
			징수부 등재	년 월 일 (인)			
과장			납·감액 통지 또는 납세 고지서 발부	년 월 일 (인)			
팀장			납액 통지 제호	년 월 일 (인)			
담당자			납기	년 월 일 (인)			
세입과목	관			세입연도	년도 세입		
				결정내용	본세	가산금	계
	항목			세액			
				가산세			
				결정액			
결정세액	금		원(₩ )				
납세인원	시(도) 구(시·군)		대로(로·길) 00 외 명				
적요	년도 월 분 세			수납부	(인)		
				등재			
				환급금	(인)		
				정리			
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							
※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내역서**

동	구분	과세표준	세율	(부과·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 시효완성정리) 결정액			납세인원	납액(감액) 통지번호
				계	본세	가산금		

※ 감액·정리보류, 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 시 호 완 성 정 리 표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 따라 시호완성정리 하고자 합니다.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년 월 일			
과세 번호	연도/ 기분	세목	납세의무자		세액		
			성명	주소	본세	가산금	계

210mm×297mm(백상지 80g/㎡)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용어 변경 등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결손처분”의 사유를 성격별로 구분하여 “정리보류”와 “시효 완성정리”로 법령에 맞게 용어를 구분하여 정비함(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3조제2항 신설, 제14조 및 제15조 등).
- 나. 예술품등의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사무와 관련 상위 법령 인용 조문을 변경함(제18조 및 제20조 등).
-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함.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9월 30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942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 제목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수익허가한”을 “사용허가를 한”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정리대장)”을“(대부 및 사용허가 관리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 정리대장”을 “사용허가 관리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의 제목 “구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정리대장”을 “구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관리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계약(갱신) 년월일”을 “계약(갱신) 연월일”로, “징수 년월일”을 “징수 연월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본문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의 제목 “대부(사용·수익허가) 재산 현황”을 “대부·사용허가 재산 현황”으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법률 제18086호, 2021. 4. 20. 일부 개정, 2022.4.21. 시행) 개정에 따라 연관 용어를 정비하여 법령 간 통일성을 제고하고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함(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
- 나. 용어 정비에 따라 서식을 정비함(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  
에 발령한다.

2022년 9월 30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훈령 제473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 본청 보좌·보조기관 직렬별 정원(제2조제1항 관련)

※ 엑셀파일 별첨

[별표 2] 의회사무과 직렬별 정원(제2조제2항 관련)

※ 엑셀파일 별첨

[별표 5] 동행정복지센터의 직렬별 정원(제2조제5항 관련)

※ 엑셀파일 별첨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규칙에서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에 따라 기관(부서)의 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본청 등의 직렬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1, 별표 2 및 별표 5).
  - ▶ 본청: 511명 → 512명(1명 증가)
  - ▶ 동행정복지센터: 167명 → 176명(9명 증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정 폐지규정을 이  
에 발령한다.

2022년 9월 30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총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훈령 제474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정 폐지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 □ 폐지이유

공약 이행을 위한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및 능동적인 공약 이행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본 규정은 폐지하고자 함.

### □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정」을 폐지함.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징물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2년 9월 30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훈령 제475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징물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징물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 □ 폐지이유

구 상징물의 종류와 의미를 명확히 하여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본 규정은 폐지하고자 함.

### □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징물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30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 도로명주소 부여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석봉동 179-27	석봉로58번안길 23	2022. 9. 30.	건물신축	석봉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5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의 안쪽길
석봉동 573-2, 501-4, 555-4	대덕대로1585번길 16	2022. 9. 30.	건물신축	대덕대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15,8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상서동 326-46	새말1길 37	2022. 9. 30.	건물신축	옛 지명(새말) 명칭 반영
목상동 207-16, -17, -31	대덕대로1520번길 48	2022. 9. 30.	건물신축	대덕대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15,2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보과(☎ 042-608-5305)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끝.

##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 승인 고시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202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30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1. 결산개황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일반회계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 회계 등 5개 기타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서 선임·위촉한 서미경 결산검사 대표위원 외 3명의 위원에게 2022년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에 걸쳐 심도 있는 검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덕구의회에 승인 신청하여 2022년 9월 29일 제26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

#### 2.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 원)

구 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현액		614,556,197,630	606,500,616,450	8,055,581,180
결산액	세입	623,111,540,753	614,678,067,710	8,433,473,043
	세출	541,321,241,917	534,225,206,745	7,096,035,172
결산상잉여금	계	81,790,298,836	80,452,860,965	1,337,437,871
	명시이월	31,090,332,960	30,931,759,090	158,573,870
	사고이월	13,503,146,770	13,152,108,280	351,038,490
	계속비이월	0	0	0
	보조금실제반납금	10,157,471,328	10,085,759,939	71,711,389
	순세계잉여금	27,039,347,778	26,283,233,656	756,114,122

### 3. 일반회계결산

#### 가) 세 입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이월액
계	606,500,616,450	620,152,392,712	614,678,067,710	534,596,810	4,939,728,192
지방세수입	51,217,483,000	56,002,470,010	55,177,755,260	71,763,750	752,951,000
세외수입	14,045,831,000	22,470,877,734	17,821,267,482	462,833,060	4,186,777,192
지방교부세	28,003,000,000	28,604,131,560	28,604,131,560	0	0
조정교부금 등	79,949,420,000	80,369,228,000	80,369,228,000	0	0
보조금	374,439,615,000	373,737,852,630	373,737,852,630	0	0
보전수입 등	58,845,267,450	58,967,832,778	58,967,832,778	0	0

#### 나) 세 출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보조금반납금	집행잔액
계	606,500,616,450	534,225,206,745	44,184,367,370	10,085,759,939	18,005,282,396
일반공공행정	23,125,406,370	19,145,167,138	2,073,097,730	235,135,739	1,672,005,763
공공질서및안전	1,425,524,000	1,263,101,020	0	10,879,230	151,543,750
교육	2,828,776,000	2,717,470,452	0	15,684,038	95,621,510
문화및관광	28,197,549,800	11,781,746,767	15,710,011,190	116,484,760	589,307,083
환경	14,894,907,000	14,441,617,870	0	83,623,863	369,665,267
사회복지	332,468,466,380	310,343,281,949	10,635,766,720	7,584,037,493	3,905,380,218
보건	12,386,538,000	11,302,986,157	38,080,000	637,069,738	408,402,105
농림해양수산	9,162,126,000	8,166,503,585	209,586,700	293,380,435	492,655,28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5,525,018,000	22,977,010,220	1,347,550,400	434,281,053	766,176,327
교통및물류	36,585,835,840	32,238,613,690	3,844,866,040	106,587,097	395,769,013
국토및지역개발	44,399,012,060	32,643,234,868	10,325,408,590	528,743,200	901,625,402
과학기술	77,468,000	52,479,400	0	0	24,988,600
예비비	2,401,702,000	0	0	0	2,401,702,000
기타	73,022,287,000	67,151,993,629	0	39,853,293	5,830,440,078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 4. 특별회계 결산

##### 가) 세 입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이월액
계	8,055,581,180	10,526,681,694	8,433,473,043	12,867,180	2,080,341,47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26,545,000	26,545,094	26,545,094	0	0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801,862,000	1,366,671,110	939,393,969	0	427,277,141
수질개선 특별회계	996,114,000	999,576,980	999,576,980	0	0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1,224,553,000	1,251,963,645	1,200,378,175	36,640	51,548,830
주차장 특별회계	5,006,507,180	6,881,924,865	5,267,578,825	12,830,540	1,601,515,500

##### 나) 세 출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보조금반납금	집행잔액
계	8,055,581,180	7,096,035,172	509,612,360	130,764,727	319,168,92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26,545,000	25,970,000	0	530,000	45,000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801,862,000	742,806,782	0	59,053,338	1,880
수질개선 특별회계	996,114,000	920,152,580	22,000,000	53,144,189	817,231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1,224,553,000	1,148,151,020	0	0	76,401,980
주차장 특별회계	5,006,507,180	4,258,954,790	487,612,360	18,037,200	241,902,830

※ 2021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작성방식에 따라, 보조금반납금과 보조금실제반납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5. 기금현황

(단위 : 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㉑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㉒=㉑+㉓
		계㉓=㉔-㉕	조성액㉔	사용액㉕	
계	33,746,965,859	10,559,957,022	13,827,513,852	3,267,556,830	44,306,922,88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통합 계 정 )	28,566,784,901 (365,312,170)	12,377,500,992 (△16,977,840)	12,905,978,062 (348,334,330)	528,477,070 (365,312,170)	40,944,285,893 (348,334,330)
저소득주민자립장학기금	167,999,128	△3,452,510	2,547,490	6,000,000	164,546,618
자 활 기 금	2,595,247,792	20,444,203	120,394,203	99,950,000	2,615,691,995
노 인 복 지 기 금	637,893,464	△2,227,340	10,092,660	12,320,000	635,666,124
양 성 평 등 기 금	657,601,727	△10,308,580	9,691,420	20,000,000	647,293,147
녹 지 기 금	1,731,056,526	27,884,209	27,884,209	0	1,758,940,735
재 난 관 리 기 금	2,581,146,860	△740,427,010	1,212,911,650	1,953,338,660	1,840,719,850
식 품 진 흥 기 금	522,924,953	△72,751,920	62,884,080	135,636,000	450,173,033
주 차 장 조 성 기 금	2,563,992,459	159,240,010	759,240,010	600,000,000	2,723,232,469
환 경 보 전 기 금	539,319,740	7,910,490	7,910,490	0	547,230,230
청 사 건 립 기 금	21,384,471,040	11,190,623,310	11,265,623,310	75,000,000	32,575,094,350

※ “계”는 통합관리기금과 개별기금과의 중복액(통합관리기금예탁금)을 제외한 순계규모이며, 중복액을 제외한 통합관리기금 순규모는 ( )안에 표기하였음.

6. 채권현재액

(단위 : 원)

구 분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원 금	이 자	원 금	이 자	원 금	이 자	원 금	이 자
합 계	2,420,522,540	172,778,700	2,160,482,960	0	0	0	260,039,580	172,778,700
공 무 원 학자금대여	2,160,482,960	0	2,160,482,960	0	0	0	0	0
자활대금대여	260,039,580	172,778,700	0	0	0	0	260,039,580	172,778,700

7. 채무결산

가) 채무현황

(단위 : 원)

회계	종 류	전년도말 현재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조 정 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A-B)	발 생 액(A)	소 멸 액(B)		
“ 해 당 없 음 ”							

나) 채무부담행위

(단위 : 원)

과 목				승인일자	계약일자	채무부담행위 승 인 액	채무부담 행 위 액	상환조건	채무부담행위 사 유
조직	부문	세부 사업	편성목						
“ 해 당 없 음 ”									

8.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단위 : 원/명)

지 방 세	인 구	주민 1인당 지방세액
55,177,755,260	175,046	315,219

끝.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사행행위 금지 사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당사자 등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30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 기간: 2022. 9. 30. ~ 2022. 10. 14. [15일간]
2. 공고대상 및 내용  
가. 청문일시 및 장소: 2022.10.17.(월) 오전 10시 00분 대덕구청 문화관광체육과  
기존 2022.10.7.(금)에서 우편 송달 불가 사유로 인해 10.17.(월)로 변경

업종	업소명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처분사항	처분예정일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원투PC	박○○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로 280, 2층(오정동)	등록취소	2022.10.18.

3. 법적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4. 공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의견제출  
가. 담당부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문화관광체육과  
나.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다. 전화번호: (042) 608 - 6575 / FAX (042) 608-3282



라. 전자우편: kes90@korea.kr

6. 유의사항

가. 당사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서면·구술·이메일) 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화관광체육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

##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의견제출 내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6-31번지 상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 지정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30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1. 공고하는 사항

구 분	위 치	도 로 구 분			소유자
		면 적	너 비	길 이	
건축법상 도로지정	석봉동 316-37번지	5㎡	3m	14.8m	정○조

#### 2. 기 타

위 사항에 대한 관련도서는 대덕구청 주택정책과(☎042-608-5153)에 비치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124-1 외 2필지 상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 지정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30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1. 공고하는 사항

구 분	위 치	도 로 구 분			소유자
		면 적	너 비	길 이	
건축법상 도로지정	오정동 124-2번지	118㎡	6m	20.7m	최○은 최○홍
	오정동 674-1번지	239㎡	7.7m	31.6m	국(국토교통부)
	중리동 360-4번지	100㎡	9.6m	20.4m	국(기획재정부)

#### 2. 기 타

위 사항에 대한 관련도서는 대덕구청 주택정책과(☎042-608-5154)에 비치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2년 9월 30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명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부과, 본부과, 압류예고 압류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붙임 참고
3. 공고(의견제출) 기간: 2022. 9. 30. ~ 2022. 10. 13.(14일간)
4. 기타
  - 가.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사전부과 대상자는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심한장애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과태료 감경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금액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경우 재산이 압류(대체)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 대덕구청 사회복지과(☎042-608-6805, 68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공시송달 명단

연번	소유자 (임차인)	주 소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1	백**	대전광역시 유성구 월드컵대로253번안길 15, 4**호 (구암동, 금명빌라)	155너21**	2022-07-10 11:41:46	법동 195-1	2022.08.04	2022.08.12	폐문부재
2	신**	대전광역시 동구 동산초교로55번길 13, 2**호(홍도동)	199마18**	2022-07-28 10:14:12	송촌동 494-1	2022.08.04	2022.08.12	폐문부재
3	홍**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산로9번길 47, 4**호(중리동)	357모47**	2022-08-01 14:40:46	중리동 462	2022.08.04	2022.08.08	폐문부재
4	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산로 136, 512동13**호(송촌동, 선비마을아파트)	07호58**	2022-06-20 07:03:57	송촌동 494-1	2022.08.16	2022.08.18	폐문부재
5	임**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178, 106동 6**호(법동, 보람아파트)	24무76**	2022-08-02 18:49:56	송촌동 495-10	2022.08.16	2022.08.17	수취인불명
6	문**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489번길 73, 105동 13**호(용전동, 한숲아파트)	32거33**	2022-08-05 14:24:22	법동 448	2022.08.16	2022.08.24	폐문부재
7	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114번길 60, 315동 8**호(송촌동, 선비마을아파트)	307러92**	2022-08-05 18:33:55	송촌동 461-1	2022.08.16	2022.08.18	폐문부재
8	권**	대전광역시 대덕구 우암로412번길 114, 107동 3**호(비래동, 진흥빌라)	110너93**	2022-08-06 01:03:20	비래동 509-1	2022.08.16	2022.08.18	폐문부재
9	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15번길 54, 1동 8**호(송촌동, 평원아파트)	48다40**	2022-08-06 01:23:10	송촌동 560-6	2022.08.16	2022.08.18	폐문부재
10	곽**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761번길 24, 110동 1**호(읍내동, 현대아파트)	321오37**	2022-08-08 22:39:29	읍내동 54	2022.08.16	2022.08.18	폐문부재
11	정**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 8694-55, 102동 9**호(송전더존빌)	17다33**	2022-08-14 13:40:55	법동 371	2022.08.24	2022.08.26	폐문부재
12	신**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로30번길 4*(전민동)	21수72**	2022-08-17 11:19:04	오정동 448-3	2022.08.24	2022.08.29	폐문부재
13	홍**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262, 115동 10**호(내동, 맑은아침아파트)	158너45**	2022-08-17 16:05:59	오정동 449-1	2022.08.24	2022.08.26	폐문부재
14	박**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남로 127, 105동 8**호(둔산동, 목련아파트)	50두43**	2022-08-18 16:52:20	신탄진동 771	2022.08.24	2022.08.26	폐문부재
15	오**	대전광역시 동구 동부로10번길 55, 106동 9**호(판암동, 삼정그린코아포레스트아파트)	136러93**	2022-08-18 18:22:19	송촌동 462	2022.08.24	2022.08.26	폐문부재
16	신**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451번길 3*-9 (용전동)	대전대덕자 15**	2022-08-19 23:10:03	중리동 424	2022.08.24	2022.08.26	폐문부재
17	임**	세종특별자치시 해밀3로 32, 144동 3**호(해밀동, 해밀마을1단지)	51라07**	2022-08-19 19:35:24	신탄진동 117-25	2022.08.24	2022.08.26	폐문부재

연번	소유자 (임차인)	주 소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18	김**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17, 105동 4**호(신대동, 주공아파트)	32도05**	2022-08-26 19:26:32	비래동 140-5	2022.09.01	2022.09.05	폐문부재
19	박**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로 123, 604동 13**호(지족동, 노은해랑숲마을6단지아파트)	40나95**	2022-08-22 09:54:13	송촌동 224-13	2022.09.05	2022.09.13	폐문부재
20	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왕선로 26, 105동 13**호(하우젠트아너스빌)	02너53**	2022-08-23 08:24:33	오정동 44-1	2022.09.05	2022.09.05	폐문부재
21	박**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북로31번길 75-13, 1**호(중리동)	58마45**	2022-08-24 11:41:29	중리동 418	2022.09.05	2022.09.05	폐문부재
22	(사)대전신 체*****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용북로 71-* (복용동)	73거89**	2022-08-26 23:42:37	법동 284-1	2022.09.05	2022.09.05	이사불명
23	박**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90번길 21, 105동 18**호(법동, 선비마을아파트)	19오81**	2022-08-27 07:20:52	법동 440-4	2022.09.05	2022.09.05	폐문부재
24	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520번길 77, 101동 3**호(목상동, 평화로운아파트)	302부51**	2022-08-27 09:01:59	신탄진동 118-5	2022.09.05	2022.09.05	폐문부재
25	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로30번길 32, 5**호(석봉동, 두일아파트)	18다89**	2022-08-28 12:55:41	덕암동 12-1	2022.09.05	2022.09.05	폐문부재
26	이**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655-24, 1**호(용문동)	45머41**	2022-08-30 08:13:02	송촌동 494-1	2022.09.05	2022.09.08	폐문부재
27	오**	충청남도 공주시 시어골2길 8-** (웅진동)	04루17**	2022-07-14 11:26:21	법동 285-3	2022.09.05	2022.09.06	폐문부재
28	공**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서로138번길 26, D동 2**호(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	48머09**	2022-07-18 18:58:59	송촌동 525	2022.09.05	2022.09.14	폐문부재
29	박**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90번길 21, 105동 18**호(법동, 선비마을아파트)	19오81**	2022-06-01 07:56:37	법동 440-4	2022.09.05	2022.09.07	폐문부재
30	한**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가로림로 918, 2**호(새빛편선)	11러35**	2022-06-03 14:17:45	상서동 828-15	2022.09.05	2022.09.14	폐문부재
31	심**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9, 201동 8**호(법동, 주공아파트)	57러40**	2022-06-04 16:33:44	오정동 66-6	2022.09.05	2022.09.07	폐문부재
32	조**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160, 104동 12**호(법동, 삼익소월아파트)	60구80**	2022-06-06 20:10:59	법동 213	2022.09.05	2022.09.07	폐문부재
33	이**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655-24, 1**호(용문동)	45머41**	2022-06-11 15:46:30	송촌동 494-1	2022.09.05	2022.09.14	폐문부재
34	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145번길 1, 1**호(궁동)	58노56**	2022-06-14 15:27:33	대화동 289-1	2022.09.05	2022.09.07	수취인불명
35	박**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90번길 21, 105동 18**호(법동, 선비마을아파트)	19오81**	2022-06-18 07:09:21	법동 440-4	2022.09.05	2022.09.07	폐문부재

연번	소유자 (임차인)	주 소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36	신**	대전광역시 동구 동산초교로55번길 13, 2**호(홍도동)	199마18**	2022-06-19 08:49:40	송촌동 494-1	2022.09.05	2022.09.15	폐문부재
37	진**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20번길 85, 101동 3**호(오정동, 한남아파트)	69부17**	2022-06-25 08:40:48	오정동 464-1	2022.09.05	2022.09.07	폐문부재
38	장**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64번길 26, B**호(영화동)	170너28**	2022-06-26 18:08:31	중리동 418	2022.09.05	2022.09.13	폐문부재
39	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구비서로23번길 21, 2**호(지족동)	162호22**	2022-04-21 13:39:50	대화동 274	2022.09.05	2022.09.15	폐문부재
40	농업회사법 인 ****(주)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북로154번길 2***(성북동)	20가24**	2022-04-27 21:51:37	비래동 524	2022.09.05	2022.09.07	이사불명
41	이**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416번길 21, B**호(갈마동, 애빌라)	362주1**	2022-04-29 16:27:29	덕암동 345	2022.09.05	2022.09.14	폐문부재
42	송**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마수로 1**	81도35**	2022-04-30 13:59:33	법동 448	2022.09.05	2022.09.15	폐문부재
43	강**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117번길 50, 2**호(갈마동, 해뜨는집)	52수51**	2022-05-02 10:31:34	비래동 산 26-27	2022.09.05	2022.09.14	폐문부재
44	조**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로 1**-1(가양동)	46머58**	2022-05-09 05:46:12	송촌동 494-1	2022.09.05	2022.09.15	폐문부재
45	농업회사법 인 *****(주)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다복로 239-**	104하8**	2022-04-25 18:31:30	읍내동 54	2022.09.05	2022.09.15	폐문부재
46	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298번길 14-6, 3**호	11서56**	2022-05-14 21:42:49	비래동 539	2022.09.05	2022.09.08	폐문부재
47	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북로20번길 21-12, 2**호(송촌동)	150소1**	2022-05-22 16:55:48	송촌동 459-2	2022.09.05	2022.09.07	폐문부재



## 2022년 결산기준 지방재정공시

「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에 의거 2022년도 지방재정공시(2021회계연도 결산기준)자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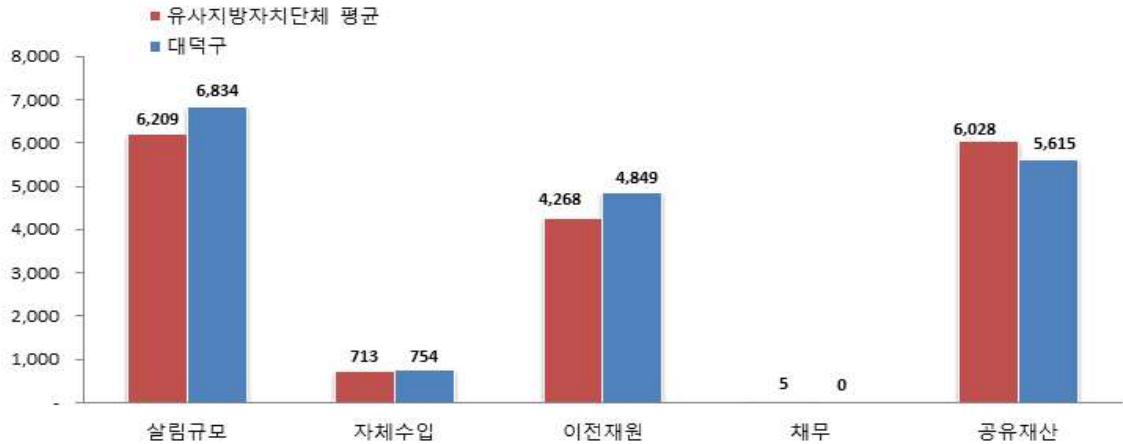
2022년 9월 30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우리 구의 2021년도 살림규모(자체수입+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834억원으로, 전년대비 573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 가.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754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32만원입니다.
  - 나.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849억원입니다.
  - 다.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231억원입니다.
2. 2021년말 기준으로 우리 구의 채무는 0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0원입니다.
  - 가. 공유재산은 '21년도에 토지, 건물 등 283건(397억원)을 취득하고, 토지, 건물 등 232건(356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5,615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 우리 구를 유형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지방자치단체 유형 : 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 14개 유형

### 유사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 규모비교 (단위: 억원)



4. 우리 구의 2021년 살림규모는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6,209억원) 보다 625억원이 많습니다.
  - 가. 자체수입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713억원)보다 41억원이 많으며, 이전재원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4,268억원)보다 581억원 많습니다.
  - 나. 채무액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5억원)보다 5억원 적고, 우리 구의 1인당 채무액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3천원)보다 3천원 적습니다.
  - 다. 공유재산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6,208억원)과 비교하여 413억원이 적습니다.
5.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살림규모 및 자체수입이 유형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많고 채무가 없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유형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적은 편으로 비교적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자체수입보다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아 세수 증대를 위한 자구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대덕구 재정세무포털>예산>지방재정공시)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042-608-605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시행에 앞서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30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89호, 2021. 10. 19. 제정, 2023.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904호, 2022. 9. 13. 제정, 2023. 1. 1.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답례품의 종류,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할 사항, 답례품의 선정·절차 및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제공 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 다.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정함(안 제7조).
  - 라. 기금의 설치, 재원, 관리·운용, 사용목적 및 기금운용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

- 마.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등 심의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 바. 자금 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 및 제20조).

#### 4. 의견 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 10. 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공동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체과(전화: 042-608-6612, FAX: 042-608-3830,  
E-mail: seungrokk@korea.kr)

라. 의견 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 5.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체과 김승록 주무관(전화: 042-608-66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위촉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위촉직 위

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부서장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구에서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5. 상품·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업무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⑤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구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2.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 농산물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 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구가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의 제조품일 경우 구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품목
10. 구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물품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12. 지역사랑 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구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  
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상품화·품질관리·배송에 필요한 인력·시설·장  
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구에 생산·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구나 민간업체의 온라인 쇼핑몰 또는 TV  
홈쇼핑 입점·판매 여부
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의 선정 및 절차)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  
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모 접수  
개시일 14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구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4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답례품비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 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 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 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 역시 대덕구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0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담당업무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자가 아닌 6급 직원 중 과장이 지정한 사람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여야 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2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 중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 나. 구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 다.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 사람

- ⑤ 위촉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인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 위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전에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제17조(간사) 심의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의 담당자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8조(의견 청취 등)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9조(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0조(기금의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구청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2. 제5조에 따른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
3.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4. 제19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3조(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선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